
「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」 신청 요령

2024. 10.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목 차

1. 목 적	1
2. 시 상	1
3. 포상훈격	1
4. 신청방법	1
5. 수상대상자 선정	1
6. 수상자 혜택	2
7. 신청기간	2
8. 문 의 처	2
9. 신청대상 및 평가기준	2
10. 신청제한	2
11. 제출서류	5
12. 제출서류 작성요령	6

1. 목 적

- 경영합리화 및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·포상하여 경영의욕을 고취하고,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으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
2. 시 상

- 일시(예정) : 2024. 12월 중
- 장 소 :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

3. 포상훈격

-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

4. 신청방법

① (우편접수)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 원본 송부

< 제 출 처 >

(0724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(여의도동 16-2)
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강민구 사원
TEL : 02) 2124-3148

② (홈페이지접수) 작성자료 한글(hwp)파일(서식 1~4) 첨부

-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www.kbiz.or.kr) → 행사·이벤트 → 포상신청접수
→ 2024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

※ 반드시 ①(우편접수)와 ②(홈페이지 접수)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.

5. 수상대상자 선정

- 제출한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에 의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심사위원회 심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
- * 접수 종료 시점부터 약 1개월 소요되며, 선정 기업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로 결과 안내 예정

6. 수상자 혜택

- 표창장(중기부장관), 기념패(중앙회장), 회원패(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) 수여
- (사)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 간 교류 사업 등 지원
-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

7. 신청기간

- 2024. 10. 7(월) ~ 2024. 11. 8(금)
- *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(11. 8)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

8. 문의처

-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(☎02-2124-3148)
- ※ 세부사항 : 중앙회 홈페이지(www.kbiz.or.kr) → 정보마당 → 입찰/사업공고

9. 신청대상 및 평가기준

- 경영혁신, 기술 및 연구개발, 사회공헌실천, 근로환경개선,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**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**
- 수공기간, 혁신경제 성과기여도 및 경쟁력 제고,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안정화, 사회공헌 실천 및 투명경영, 고용 및 고용안정 기여도, 매출액, 수익성, 자기 자본비율, 수출액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평가

10. 신청제한

- ※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
- 기업의 부도,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**최근 2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**

○ **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**

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무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○ **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*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- ‘임원’이라 함은 대표이사,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뜻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 불문하고 추천 제한,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
※ 이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**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**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- 다만,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수사 중이거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
- 상훈법 제8조,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- 기타 ‘정부포상업무지침’에서 정한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
-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내부포상지침상 추천제한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

11. 제출서류

※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

1) 작성자료

- 신청대상자 일반현황 1부(#서식 1)
- 공적조서 1부(#서식 2)
- 공적심사서 1부(#서식 3)
- 공적약술서 1부(#서식 4)
-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 1부(#서식 5)
-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(#서식 6)
- 업체 개요 및 대표자 이력서 각 1부
- 주력제품 소개 책자(브로슈어·카탈로그 등) 1부

2) 증빙자료

- 최근 3년('21, '22, '23년) 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홈택스 출력분에 한함) 각 1부
*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제출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- 최근 3년('21, '22, '23년)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
- 지점 소재지(사업장) 별도 신고업체는 본점 소재지 신고서와 함께 모두 제출
* **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지점에 한하며, 최근 3년 12월분 1부씩만 제출**
- 추천(신청)대상자가 과거 수상한 훈·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
-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(기술개발, 경영혁신, 품질·생산성 향상, 사회공헌활동 등) 각 1부
- 특허는 등록번호가 발급된 것에 한하며, 출원 만으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실용신안, 디자인등록 등은 기술개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- 객관적인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내역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

12. 제출서류 작성요령

가. 주요사항

- 작성자료*는 **중고딕·10~12포인트**로 작성
 - * 작성자료 : 일반현황, 공적조서, 공적심사서, 공적약술서
- 대표자 이력서에 증명사진 파일 반드시 첨부
- 전문용어의 영어표기 시 풀네임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재
 - * (예시) CSR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, 기업의 사회적 책임)
-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재확인하여 정확히 기재
- 공적조서의 과거포상 실적을 반드시 기재
 -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
-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, 그 외 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('21년, '22년, '23년 홈텍스출력분에 한함) 제출

나. 서식별 작성방법

- 공적조서
 -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,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
 - 특히, 주요경력의 연·월·일자까지 반드시 기입
- 공적심사서
 - 작성자는 해당업체의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대표자로 기재
- 공적약술서
 -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,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기간, 숫자,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

다. 기타 사항

- 수공기간, 재포상금지 기간,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: **2024. 11. 8(접수마감일)**
 - ※ 산정 예) '16. 5. 10 ~ '24. 11. 8 수공기간 8년으로 산정

-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(쪽 번호는 미기재)하여 제출
-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,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, 날인하여 우편 제출
 - ※ 온라인으로는 서식 1, 2, 3, 4번만 제출
- 제출서류는 신청대상자 일반현황, 공적조서, 공적심사서, 공적약술서,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,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,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
-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,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